##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56

발의연월일: 2022. 9. 22.

발 의 자:전재수·김정호·김홍걸

김회재 • 노웅래 • 맹성규

박상혁 • 박재호 • 송기헌

이병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특히,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및한의원)의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수가의 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현재 특례의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 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허목 중 "100분의 80"을 "10 0분의 75"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u>	<u>2025년 12월</u>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u>31일</u>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u>-</u>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1
가. ~ 퍼. (생 략)	가. ~ 퍼. (현행과 같음)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	허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2.

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 부. (생 략) 2.·3. (생 략) ② ~ ④ (생 략)

<u>100분의 75</u>
<u>2억</u>
<u>원</u>
고. ~ 부.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